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323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익현

피고A

변론 종결2020. 12. 3.

판결 선고2021. 1.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9. 10. 8. 접수 제455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소외 B(C생)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9. 10. 8. 소외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9. 15. 소외 B와 사이에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2. 9. 14.까지(이후 그 보증기한이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B은 같은 날 E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2. 3. 7. 소외 B와 사이에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3. 3. 7.까지(이후 그 보증기한이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B은 2012. 3. 8. E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1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B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을 할 수 있다(이 사건 각 보증약정 제5조 참조).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구상채권 취득

1) 소외 B은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2019개회53247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E은행은 2020. 1. 21. 원고에게 2019. 12. 12.자로 '회생 및 파산절차를 원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20. 4. 9. E은행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과 관련된 소외 B의 대출원리금

162,922,3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소외 B은 2020. 2. 6. 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0. 2. 11. 위 신청취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경위

1) 한편, 소외 B은 2017. 12.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소외 B은 2019. 3. 22. 위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2019. 3. 13.자로 인수하였다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는 2019. 10.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그 신고된 거래가액은 4억 원이다. 피고는 2020. 1. 29.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2020. 1. 23.자로 인수하였다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신용보증과 이에 기초한 E은행의 자금대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0. 8. 이전에 모두

이루어졌다. 소외 B이 2019. 12. 10.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점, 소외 B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20. 4. 9. 대위변제한 금액이 162,922,308원에 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B은 2019. 10. 8. 당시에 이미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E은행의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소외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또 실제로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 소외 B이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소외 B은 2019. 10. 8.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구미시 G 소재 집합건물 전유부분(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밖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소외 B은 2019.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원에, 소외 H에게 G 부동산을 6,5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는바, 위 매매가액에 비추어 보면 당시 소외 B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4억 6,500만 원으로 추인된다. 그 외에 소외 B이 별도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소외 B은 2019. 10. 8. 당시 F조합에 240,472,800원의 채무(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를, 2019. 12. 6. 기준으로 E은행에 427,480,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그 밖에 소외 B는 2018. 12. 30. 피고로부터 8,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9. 2. 8. 소외 B에게 3,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외 B가 2019. 12. 10.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사건의 진행 내역에 비추어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I 주식회사 등도 소외 B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외 B는 2019. 10. 8.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소외 B의 당시 채무액이 그의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9. 10. 8. 당시 가액은 4억 원으로 추인되는데, 그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억 9,4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일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0. 8. 이전에 소외 B에 대하여 원금 1억 1,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B의 재정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한편, 피고는 소외 B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또 피고의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그 매매대금 4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B이 피고에게 채무상환을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불안을 느껴 2018. 12. 30.자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후에도 소외 B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점(피고의 2020. 5. 28.자 답변서 변경신청서 및 제1회 변론조서 등 참조), ② 위와 같은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및 피고의 채무변제 독촉에 대한 소외 B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9. 10. 8. 당시 소외 B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으리라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10. 8.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소외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부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할 것인데, 그 공동담보 부분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신 자신의 소외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그 실질이 일종의 '대물변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④ 그런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번복시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을 넘어서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건물과 그 부지에 상응하는 토지지분으로서 경제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그 원칙적인 방법은 원물반환이고, 달리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소외 B에게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민

별지